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37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와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단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와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으로 지연납부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세 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없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합리화

1) 무신고 법인세의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안 제

26조의2제2항제1호 후단 신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 기간도 무신고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으로 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신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 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해당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율의 조정(안 제48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해당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의 감면 비율을 각각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함.

다. 포상금의 지급상한 폐지 등(안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안 제84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탈루세액,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안 제85조의5 제1항제4호)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범위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로 한다.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제2호 중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1개월 이내”를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한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18제2항제6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절차 개선”을 “절차 개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충민원(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처리”로 한다.

제8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징수된 금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또는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8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를 “해외금융계좌정보 또는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제4항”으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09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납부세액 이월세액공제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

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상한에 관하여는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이 법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지연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해당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그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감면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비율은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감면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비율은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략)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 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 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 는 때로 한다.	11.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 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 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 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 부지연가산세: <u>법정납부기 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u> 이 경과하는 때	나. ----- ----- ----- ----- <u>법정납부기 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u> -----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10. (생략)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생략)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

정법률(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법정납부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④ ~ ⑨ (생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또
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월된 외국법인세액

④ ~ ⑨ (현행과 같음)

[illegible]

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

-----.

1. -----

----- 납부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

1의2. -----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u>납부일</u> <u>의 전날까지</u>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u>납부일</u> ----- ----- ----- ----- -----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u>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u> <u>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u> <u>의 전날까지</u>의 기간 × 금융회 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2. ----- ----- ----- ----- ----- ----- <u>납부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u> <u>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u> <u>납부일)</u>----- ----- ----- ----- ----- -----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u>납부일의 전날까지</u>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2의2. ----- ----- ----- ----- ----- ----- ----- <u>납부일</u>----- -----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4. (생략)

② ~ ⑨ (생략)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
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
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
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
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
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

1. (생략)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
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 납부 고지
일의 전 날(납부 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 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u>납부일의 전날</u> 까지 경 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 ----- ----- ----- <u>납부일</u>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생 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 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	2. ----- ----- ----- -----

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
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
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신 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
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

나.·다.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
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
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
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
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
는 금액

나. -----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

다.·라. (현행 나목 및 다목
과 같음)

3. -----

<삭 제>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
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 라. (생략)

<신설>

③ (생략)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
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
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나. ~ 라. (현행과 같음)

4.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
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
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
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충민
원의 처리 등 -----

는 안전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 ⑪ (생략)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 ② (생략)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	-----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절차 개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충민원(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처리 -----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 ----- 포상금
--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
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
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
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
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

징수된
금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또는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
의2-----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 ⑥ (생략)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세조세조
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삭 제

2. 3. (생략)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 해외금융계좌정
보 또는 같은 법 제58조제3항
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제4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

-----.

2. · 3. (현행과 같음)

4. _____

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u>50억</u> 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u>30억</u> <u>원</u>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75억원

구 분 \ 연 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무신고 법인세의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26의2)	32	32	32	32	32	160	32
	가산세 감면율 상향 (§48)	△17	△17	△17	△17	△17	△85	△17
	소 계(B)	15	15	15	15	15	75	15
총 비용(A-B)		△15	△15	△15	△15	△15	△75	△1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 에서 7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2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2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6.12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무신고 법인세의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26의2)

○ 세수증 : **160억원**(연평균 32억원)

- $1,377\text{억원}^* \times 11.8\%^{**} \div 5\text{개년} \approx 32\text{억원}$

* 최근 5년간('20~'24년) 국세청에서 인정상여로 처분한 건 중 5년의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경과된 건(단, 개정안에 따른 7년은 미도래)에 대한 소득금액

** '24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

② 가산세 감면율 상향(§48)

○ 세수감 : **△85억원**(연평균 △17억원)

- $\triangle 34\text{억원}^* \times \frac{75-50}{50}\%^{**} \approx \triangle 17\text{억원}$

* 과세전적부심사 지연으로 감면된 가산세('20~'24년 평균)

** 개정에 따른 현행 대비 감면율 인상분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팀장)	국장
이희범	최관수	서준익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관수	044-215-4151	choiks0229@korea.kr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해당없음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팀장)	국장
이희범	최관수	서준익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관수	044-215-4151	choiks0229@korea.kr